

2017.9평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지문 바로 '사단'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추상적 어휘도 많고, 그러면서도 정보의 양까지 많았던 지문이죠.

초도독해를 시작해볼까요?

개념정의부터 등장합니다.

'**권리능력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재진술이 시작 되네요.

재산에 대한 소유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 채무.

기본적인 어휘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지문 중 하나입니다.

(기본어휘 - 채권 : 부채를 받을 권리, 채무 : 부채를 갚아야 하는 의무)

어쨌든 '**소유권, 채권, 채무 = 권리능력**'으로 재진술을 파악하셨으면 성공적 입니다.

이어,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여기서 범주가 **사람에서 단체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어 '**단체의 권리능력이 법인격**'이라는 추가 개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어 개념정의가 계속됩니다.

단체 중

- 1)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조직체
- 2)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
- 3) 운영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

1~3)을 충족하는 단체를 사단이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개념정의(조건)가 열거될 때는 번호를 매겨가면서 읽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또 개념정의 '**사단의 성질 = 사단성, 구성원 = 사원**'

자, 또 개념정의.

1~3)의 조건을 갖춘 사단이 '**4) 법인으로 등기**'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격이 생깁니다.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법인'으로 정의**합니다.

'반면에 대립적 요소네요.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입니다.

사람의 권리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되고, 자단법인의 빚(채무)는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고 읽어내려 가시면 끝났습니다.

말이 1단락이지,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정보의 양이 상당하네요.

1단락을 읽고, 기억에 남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람의 권리능력 → 단체의 권리능력 "법인격"**

**사단, 사단성, 사원, 사단법인이라는 개념어 등장**

그리고 사단을 정의할 때 열거되는 개념들을 번호를 매기면서 읽어두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문제 풀 때 다시 세부독해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라는 문장에서 우리는

'**회사=사단법인**'이 잡혔으면 성공적입니다. 이어, '**주식회사=회사=사단법인**'.

즉, 2단락은 1단락에서 정의한 사단 법인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 사례로 주식회사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1단락에서 정의한 개념어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미리 잡으면서 읽어주실 것을 권합니다.

'주식회사 = 사단 법인 / 구성원, 주주들 = 사원' 이렇게 말이죠.

(주식회사는 기본적인 어휘력이 있다면 어렵지 않았던 단락입니다.)

그 다음, <그런데>라는 전환의 접속사가 등장하면서 일인주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일인 주주=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상법에서 인정**'

→ 결론 :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는 흐름으로 읽어내려오셨으면 성공적입니다.

(초도독해에서 모든 정보를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세요.)

정리해볼까요?

2단락에서 기억해줄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주식회사=회사=사단법인**'

**일인 주식회사 → 경영주체 모호=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으로 보이지 X**

[개념정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재진술]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개념정의]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개념정의]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조건, 개념정의] 사단은 법인(法人)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전환, 일인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 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재진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문제점 제시]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개념정의]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부작용1]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부작용2]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부작용 종합, 재진술]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재진술]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자, 첫 문장이 앞 문단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인 주식회사가 정상은 아닌 것으로 이해했죠?  
 이 때 문제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앞 단락에서의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 개인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인다'**는 진술이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되었다는 것이 감지되었으면 성공적입니다.

이여, 개념정의가 나열됩니다. 이 부분은 큰 흐름에서 일인 주식회사가 문제라는 논리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정의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죠.

'**이사회**' = 업무집행의 의결기관  
 '**대표이사**' = 이사 중 한 명,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  
 '이사의 선임과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

'**주주가 한 사람 → 부작용1) 이사회, 주주총회 기능 퇴색**  
**부작용2) 회사이익 → 대표이사에게 귀속/회사는 허울뿐**  
**부작용종합)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힐 수 있음.**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됩니다.  
 '**법인격 부인론=회사=주주 동일시**' 랍니다.  
 '**일인주주일때는 회사를 주주와 동일시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3단락에서 기억에 남길 것.  
**일인 주식회사문제**가 있다. (부작용 2가지)  
 그래서 '**법인격 부인론(일인 주식회사 : 주주=회사 동일시, 주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 제기된다.

이 정도면 초도독해에서 흐름을 충분히 잡으셨습니다.

자, 이제 초도독해가 끝났습니다.

이제 지문에 대한 지도그리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어떻게 지도가 그려져있어야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지문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 [지문 전체의 구조]

1단락 : 권리능력, 법인격 정의 (사단, 사단성, 사원, 사단법인 등의 key word 등장)

2단락

- 사단법인의 구체적 사례 (주식회사) / (주주총회, 대표이사, 이사회 등의 key word 등장)

- 일인주식회사 : 경영주체 모호=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으로 보이지 X (문제상황으로 인식)

3단락

- 일인 주식회사문제기가 있다. (부작용)

- 그래서 '법인격 부인(일인 주식회사 : 주주=회사 동일시 / 주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 제기된다.

정리해보자면,

수많은 개념정의를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읽되,

결국 단락별로 이야기하는 바가 무언인가, 즉,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읽어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도독해를 통해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졌다고 생각하고, 3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35.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 어디로 갈까요? 네. 1단락. 사단성에 대한 정의가 나온 단락으로 이동! '운영 기구를 두어'라는 표현이 있네요

②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 어디로 갈까요? 네. 2단락. 추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회사=사단'까지는 우리가 잡았죠?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구성원인 주주는 사단의 사원으로 볼 수 있는가?'

③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어디로 갈까요? 네. 1단락.

정보의 조합과 추론이 요구됩니다. 법인격=권리능력 이죠? 권리능력은 1단락 첫 부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권리능력=소유권, 채권, 채무'로 재진술되었죠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로 치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맞는 선지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④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 어디로 갈까요? 네. 1단락.

복잡한 개념정의를 단순화해야겠죠?

1)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조직체

2)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

3) 운영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

1)~3)을 충족하는 단체를 사단

1)~3)의 조건을 갖춘 사단이 '4) 법인으로 등기'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격이 생깁니다.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법인'으로 정의합니다.

선지에서 '사단 법인' = 1)~4)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단체죠. 당연히 법인격이 있을 것입니다.

즉, 1)~4)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니, 3)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선지가 됩니다.

⑤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 어디로 갈까요? 역시. 1단락. 정보의 조합과 상당한 추론이 필요합니다.

5번선지를 단순화 해보겠습니다. '~단체에 법인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1단락을 다시 세부독해해보면, '사단'은 '1)~3)의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은 '1)~4)'였습니다. "사단(1~3) 조건을 충족=법인격"이라는 결론은 잘못된 결론인 것이죠.

이 문제를 세부독해할 때, 승부는 only 1단락이었습니다.

1단락에서 복잡한 개념정의를 번호를 매겨가면서 정리하면 쉽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면 성공입니다.

이러한 연습은 기출로 숙달되어야 합니다.

이어, 36번~38번 문항도 뜯어보겠습니다.

**[개념정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재진술]**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개념정의]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개념정의]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조건, 개념정의]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빛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 사원 개인에게까지 ㉢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어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전환]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체**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개념정의]**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종합]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재진술]**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36. 윗글에서 설명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 즉 - 2-3단락이 승부인 문제]

①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 손쉽게 2-3단락으로 가아함을 알 수 있겠죠?

대표이사라는 키워드가 3단락에 있다는 것을 잡아주셨으면 훌륭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기관'이라는 정의가 잡힙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대표한다? 꼼꼼하게 찾아보아야겠습니다.

2단락 끝부분.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에서 재진술되어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② 일인 주식회사는 대표 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 전체적인 흐름으로 파악해야하는 문제입니다. [흐름으로 추론]

1)~4)의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격을 갖는다고 초도독해하신 것 기억하시죠?

일인주식회사 : 사람인격과 법인격이 구분되지 않아 문제

→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고 흘러왔죠?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는 추론은 맞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사람인격과 법인격이 구분되지 않아 문제이고, 따라서 법인격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법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개인이 책임지라는 것이죠.)

③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 단순 정보의 확인 선지입니다.

3단락의 '이사의 선임과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는 정보를 확인하시면, 바로 지울 수 있는 선지입니다. 틀린 선지죠.

④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총회가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다.

→ 역시 3단락 단순 정보의 확인선지입니다.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라는 부분을 찾았으면, 바로 지울 수 있는 선지입니다. 틀린 선지죠.

⑤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일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없다.

→ 역시 단순 정보 확인 선지입니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틀린 선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적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3, 4, 5번 선지는 초도독해만 잘 되었으면, 정보의 위치도 잘 찾을 수 있고 추론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1, 2번 선지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했을 수 있습니다.

**[개념정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재진술]**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개념정의]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개념정의]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조건, 개념정의]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어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전환]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개념정의]**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종합]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재진술]**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37. ㉠~㉥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  
→ 이런 문제는 앞뒤 부분을 잘 살펴서 풀어야 합니다. 바로 윗 문장에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의 구성원(사람)인 사원은 법인격과 구분된다고 **추론**해줄 수 있습니다.
- ② ㉡ :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  
→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같은 문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책임 → 의무'라는 것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것은 기본 어휘력입니다.
- ③ ㉢ :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  
→ '사단성'에 대한 정의를 떠올려야겠죠?  
2단락에서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1), 2), 3)의 성질을 갖춘 단체가 사단이고, 사단의 성질이 사단성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C)에서 '일인 주주로 회사(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이라 함은 1)~3)의 조건 중에서 "사람들"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문맥상 (C)의 '사단성'=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뜯어보면 역시 **추론이 필요한 선지**였습니다.
- ④ ㉣ :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  
→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재진술해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영의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보인다"라고 추론해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영의 주체=회사** →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 실체**라고 선지와 맞추어준다면, 이 선지가 맞는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⑤ ㉤ :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  
→ '앞부분에서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다'라고 진술해주었습니다. 즉, '회사로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회사의 자산이 감소한다'까지는 추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리능력을 누릴 수 없다는 추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틀린 선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리능력은 1단락 첫 부분에서 의무와 권리**로 보았죠. 그러나 이 '허울'만인 상황 때문에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에만 책임을 묻지 않고 주주에게 묻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다시 말해, '**허울'만인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즉, 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데, 책임은 법인에 남아 있는 것이 문제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허울 뿐인 상황)

**[개념정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재진술]**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개념정의]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개념정의]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조건, 개념정의]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어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전환]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체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기되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개념정의]**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종합]**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재진술]**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38.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항입니다.

초도독해에서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감을 잡고

선지를 지워나가기 전에 세부독해를 통해 다시 정의해봐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론이 뭐지?"**

1) 일인 주식회사의 문제점

= 이사회, 주주총회 퇴색, 이익 일인주주에게 귀속, 재산상 피해

2) 특정한 거래관계에 한해 회사의 법인격 부인, 회사에만 책임을 물으면 안됨.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면, 바로 맞는 답을 고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 ①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상황파악에 실패했네요
- ②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 (㉣)바로 아랫부분에 '법률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이라고 나왔습니다. 법률을 개정했다는 것이 잘못되었죠
- ③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일시적으로~'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영구히 박탈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죠
- ④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이다.  
→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법인'의 권리능력, 즉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죠
- ⑤ 특정한 거래 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 정확한 선지네요.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과 정확히 부합합니다.